

제4장 심판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이라 함) 정관 제37조, 제44조에 따라 K리그 심판제도의 운영 및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및 K리그 심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심판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K리그 심판의 선발, 배정,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연맹에 심판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 ② 구성
 1. 위원회는 심판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310인 이내 심판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심판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변경. 2018/01/15 개정>
 2. 위원장은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배정, 분석, 평가, 교육 담당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정한다.
- ③ 위원의 자격
 1. KFA1급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
 2. KFA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자
 3. K리그 심판 및 국제심판 또는 KFA1급 심판자격을 3년 이상 보유자로서 활동한 자
 4.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이라 함) 심판 강사로 활동하는 자 중 추천을 받은 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6.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가. 협회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로 활동 중인 자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K리그 심판에 대한 배정, 평가, 교육, 감독에 대한 기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K리그 심판의 배정
- ② K리그 심판에 대한 관리, 감독
- ③ K리그 심판에 대한 경기 동영상 분석 및 평가
- ④ K리그 심판에 대한 이론 및 실기 교육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위원의 임무

- ① 배정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이론 및 실기)한다.
- ② 경기 종료 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K리그 심판의 경기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③ K리그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한다.
- ④ 위원은 K리그 심판 평가(심사) 및 수행평가 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주재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K리그 심판 선발 및 자격

- ① K리그 심판은 KFA1급 심판 자격 보유자 중에서 협회의 추천을 받아 연맹이 결정선발한다.
<변경. 2018/01/15 개정>
- ② 선발절차
 1. K리그 심판은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의 연간판정 평가표 점수를 근거로 협회에 차년도 K리그 심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협회는 연맹 제출명단을 기초로 K리그 심판을 추천한다.
 2. 선발된 K리그 심판은 전년도 연간판정 평가표 점수를 근거로 클래식 리그 심판과 챌린지 리그 심판으로 분류된다.
 3. 선발된 K리그 심판은 연간판정 평가표 점수를 근거로 매년 각 리그의 심판평가 상위자와 하위자간 승강(교체)을 실시한다.

③ K리그 심판의 자격

1. 주심 및 부심은 KFA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경기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협회 또는 연맹의 경기 배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변경. 2018/01/15 개정>
2. 주심
 - 가. 당해 연도 국제 심판(주심) 또는 국제 심판 경력자
 - 나. KFA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K리그 경기 주심 배정이 가능한 능력 우수자
3. 부심
 - 가. 해당연도 국제 심판(부심) 또는 국제 심판 경력자
 - 나. KFA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K리그 경기 부심 배정이 가능한 능력 우수자
4. 비디오판독(VAR) 심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비디오판독 심판 으로 승인한 자
 - 가. 본항 1호에 해당하는 주심
 - 나. K리그 주심으로 출장한 경력자 중 VAR교육을 받은 자
 - 다. K리그 심판 경력자로 현재 심판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추가. 2018/01/15 개정>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자는 K리그 심판이 될 수 없다.
 - 가. 협회 및 연맹 징계중인 자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외국인 심판
 - 가. 외국 국적의 심판은 KFA1급 심판 자격소지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 나. 연맹의 요청에 의해 외국 협회, 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제9조 K리그 심판의 배정

K리그 및 기타 연맹 주최 대회의 심판 배정은 자동화 배정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이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정한다.

- ① K리그 심판 배정은 주심 대상 2명, 부심 대상 2명, **비디오판독 심판 2명**을 1조(64명)로 하며, 매 경기마다 심판을 교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배정된 심판이 심판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 및 위원과 논의 후 당해 선발된 다른 K리그 심판으로 교체 할 수 있다. <변경. 2018/01/15 개정>
-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K리그 심판 중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복 배정이 가능하다.
- ③ K리그 심판의 배정은 대외비로 하며, 위원회는 거점 숙소제 운영 원칙에 따라 해당심판에게 배정 통보 시기 및 배정 지역을 개별 통보한다.
- ④ 배정된 K리그 심판의 포지션(주심, 부심1, 부심2, 대기심)은 2시간 전 위원장이 해당 경기 경기감독관에게 개별 통보하고, 경기감독관은 경기장에서 해당 심판들에게 통보 한다.
- ⑤ ①항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심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⑥ K리그 심판 행동윤리강령, 부정행위근절 서약을 이수(이행)한 심판만 경기에 배정 한다.
- ⑦ 프로예비 심판(주심 또는 부심)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KFA 1급 심판 자격 보유자 중 당해 시즌 내셔널리그 또는 K3리그 심판으로서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K리그 경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자 <추가. 2018/01/15 개정>

제10조 K리그 심판의 임무

- ① K리그 심판은 연맹 규정, 대회요강, 행동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항상 연맹 및 위원장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K리그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패용해야 한다.
- ④ K리그 심판은 연맹에서 지정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⑤ 거점숙소제 운영으로 출장 시 연맹이 지정한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하며, 배정 경기감독관에게 투숙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무박 일정의 경우 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
- ⑥ 배정된 심판은 경기개최시간 120분(2시간) 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 ⑦ 경기 전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 시,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한다.
- ⑧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한다.
- ⑨ 경기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연맹 양식에 따라 심판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⑩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⑪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 ⑫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외부 단체로 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제11조 보수

- 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보수는 연맹과의 별도 계약으로 결정한다.
- ② K리그 심판의 보수는 수당과 출장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 및 지급 시기에 대하여 연맹이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해 운영한다.

제12조 평가

- ① 위원회는 배정 심판에 대하여 매 경기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한다.
- ②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감독관 보고서와 분석 담당 위원이 제출한 심판판정분석보고서는 심판고과 평가, 배정, 승강(교체)시 자료로 활용한다.
- ③ 평가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해당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하고, 심판 승강(교체)시

활용한다.

- ④ 평가 가능한 항목 및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해 운영하며, 세칙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면 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 ⑤ 심판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시즌 중 또는 시즌 종료 후 심판 승강(교체)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배정에 반영한다.

제13조 K리그 심판의 승강

- ① K리그 심판의 승강(교체)을 위한 기준은 제12조 평가에 따른다.
- ② K리그 심판의 승강(교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시즌 중 승강(교체)은 6월 마지막 라운드까지의 평가에 따라 클래식 리그 심판평가 하위자 주심, 부심 각2명과 챌린지 리그 심판평가 상위자 주심, 부심 각2명을 승강(교체)할 수도 있다.<삭제. 2018/01/15 개정>~~
 - 1. 시즌 종료 후에는 클래식 리그 심판평가 하위자 주심, 부심 각2명과 챌린지 리그 심판평가 상위자 주심, 부심 각2명을 반드시 승강(교체)하고, 챌린지 리그 심판평가 하위자 주심, 부심 각2명과 **내셔널리그실업리그(N리그)** 심판평가 상위자 주심, 부심 각2명을 반드시 승강(교체) 한다.<변경. 2018/01/15 개정>
 - 2. ~~시즌 중 K리그 심판들의 승강(교체)은 협회에 통보하며, 시즌 종료 후 승강(교체)대상자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은 연간 판정 평가표 점수를 기준으로 협회가 추천하고 연맹이 선발한다.<변경. 2018/01/15 개정>~~

제14조 배정 정지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K리그 심판의 배정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상기 제8조 3항, 제9조 6항, 제10조 부적격자 또는 위반자
- ② 협회 또는 연맹이 실시하는 체력테스트 탈락자
- ③ 심판 평가 회의에서 배정 정지가 결정된 자

제15조 교육, 훈련, 체력테스트

K리그 심판 교육, 훈련, 체력테스트는 협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① 교육
 - 1. 기간 : 비시즌 또는 휴식기
 - 2. 장소 : 국내·외
 - 3. 방법 : 집합 교육
 - 4. 내용
 - 가. 심판 운영 방안
 - 나. 판정 가이드라인

- 다. 규칙
- 라. 판정 적용의 통일성
- 마. K리그 심판으로서의 기본 지침
- 사. 부정 방지 교육 등
- 아. 교양 및 정신 강좌

② 훈련

- 1. 기간 : 비시즌 또는 휴식기
- 2. 장소 : 국내.외
- 3. 방법 : 집합 교육
- 4. 내용 : 실전 경기 투입 및 맞춤식 분석 교육 등

③ 체력테스트

- 1. 기간 : 연간 1회(시즌 종료 후 협회와 협의)
- 2. 장소 : 국내
- 3. 방법 : FIFA 체력테스트 방식(FIFA 심판 체력테스트 참조)

④ 수시 교육

- 1. 기간 : 시즌 중 수시로 이론 및 체력 실시
- 2. 장소 : 국내
- 3. 방법 : 집합 교육
- 4. 내용
 - 가.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 나. 이론 및 실기 교육
 - 다. 체력상태 체크(FIFA기준)
 - 라. 주요 지침사항 전달 등

제16조 상벌

- ① 상벌 규정 '징계기준' 위반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K리그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한 K리그 심판은 상벌규정(유형별 상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시즌 중 매월 최우수 심판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③ 매년 최우수 주심, 부심 각1명 선정하여 연말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 ④ K리그 심판으로 활동한 후 은퇴한 심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공로패를 시상할 수 있다.
 - 가. 주심 : 경력 9년 이상 및 K리그 공식 경기 150경기 이상 출장
 - 나. 부심 : 경력 9년 이상 및 K리그 공식 경기 300경기 이상 출장 <추가. 2018/01/15 개정>
- ~~④ 위 포상 및 시상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한다.<삭제. 2018/01/15 개정>~~

제17조 세칙의 제정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8조 준용 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FIFA규정, IFAB국제축구평의회 규칙, 협회 심판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에서 그 시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